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19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문대림・주철현・이원택

안도걸 • 이병진 • 송옥주

김영호 · 전종덕 · 김한규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업,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,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,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,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수산업법」 제60조제1항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5조제1항, 및 「어업자원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, 「수산업법」 제60조제2항 및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9조 및 제292조).

법률 제 호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9조제1항 중 "제61조제1항에"를 "제61조제1항, 「수산업법」 제60조제1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62조제1항·제3항"을 "제60조제2항 본문, 제62조제1항·제3항"으로 한다.

제292조제1항 중 "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"를 "제15조제1항, 제41조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 및 「어업자원보호법」 제2조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44조제4항 후단"을 "제15조제2항, 제44조제4항 후단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9조(수산업에 관한 특례) ①	제289조(수산업에 관한 특례) ①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	
따른 양식업(육상해수양식업)	
및 「수산업법」 제48조에 따	
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	
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	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61조제1	제61조제1
<u>항에</u>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	항, 「수산업법」 제60조제1항
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	<u>에</u>
다.	
②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3항,	2
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	
분, 제19조제1항제2호, 제27조	
제5항, 제28조제5항(정치망어업	
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	
다), 제37조제1항, 제40조제4항	
(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	
항에 한정한다), 제48조제1항	
및 같은 조 제4항 단서, 제49조	
제4항(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	
한정한다), <u>제62조제1항·제3</u>	<u>제60</u> 조제2항 본문 <u>,</u>
<u>항</u> , 같은 조 제4항제2호, 같은	<u>제62조제1항ㆍ제3항</u>
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	

항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36조 제5항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) 및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제6항,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도록 한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 ③ · ④ (생 략)

제292조(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수산자원관리법」 <u>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</u>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
②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62조 제4항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 법」 제37조의12제3항 전단, 제 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 제3항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<u>제4</u> 4조제4항 후단,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3)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92조(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
한 특례) ①
<u>제15</u> 조제1항, 제41조제1항
제7호, 같은 조 제2항 및 「어
업자원보호법」 제2조에
②
제1
5조제2항, 제44조제4항 후단
<u>01/11/0, /1111/1110 11</u>
··